

2017년 「산림청 해외산림인턴사업」 인턴 추가모집 공고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산림청 해외산림인턴사업」에 참여할 인턴을 추가모집 합니다. 해외산림자원개발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7년 04월 13일

산림청장

한국임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산림분야의 해외직장체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 맞춤형 인력 지원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촉진

나. 사업 프로그램

- (기업체인턴) 졸업(예정)자, 청년 미취업자 위주로 해외산림개발 기업에 파견하여 인턴십 이후 취업연계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

다. 지원 인원 및 대상

- 추가모집 인원 : 15여명 내외(기업인턴)
* 최종 선발인원은 기업 지원 현황에 따라 조정 가능

2. 사업내용

가. 인턴 모집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35세 이하인 자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자격조건
 - 산림관련 대학(원)·전문대 졸업자(예정자포함), 졸업 후 미취업자, 재·휴학생(5학기 이상 수료자)
 -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 후 산림관련업체 2년 이상 종사자
 - 해외인턴 및 해외취업에 필요한 비자 발급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파견 기간 내 건강, 취업 등 신상변동에 의한 중도포기 우려가 없는 자
 - * 공무원 발령 대기자, 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지원불가
- 과거 정부해외인턴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자
 - * '일모아' 사이트(www.ilmoa.go.kr)에서 국비지원사업 수혜여부 확인
- 해외 거주자 및 해외 대학 재학생, 해외에서 직접 근무지로 파견되는 경우 및 이중 국적자 참가 불가

나. 근무 지역 : 각 해외산림개발 기업

다. 근무 기간

- '1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운용**을 기본으로 하되, 업체 근무 여건에 따라 탄력적(4~6개월) 조정·운영 가능
- 기업인턴의 경우 필요시 3개월 내외로 국내근무 가능
 - * 단 해외파견 3개월 이상
- 근무시간 및 복무조건 : 근무시간 및 복무조건은 해당기업(기관)의 복무규정을 준수하되 “근로기준법” 준수
 -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 지원내역

- 지원내역 : 체재비, 항공료 및 해외파견준비비(비자비, 해외보험비 등)
 - ① 해외근무에 대한 지원

지급액/1인당/월(천원)	추가지원금/1인당/1회(천원)	
(급여성) 체재비	항공료(왕복/1회)	파견 준비비(년)
800~1,400	한도내 실비지원	1,200

- * 지원내역은 인턴기간, 지역 및 국가 등에 따라 1인당 지원액 상이함
- * 해외파견준비비(보험료, 비자발급비, 교육비 등)는 지원한도액(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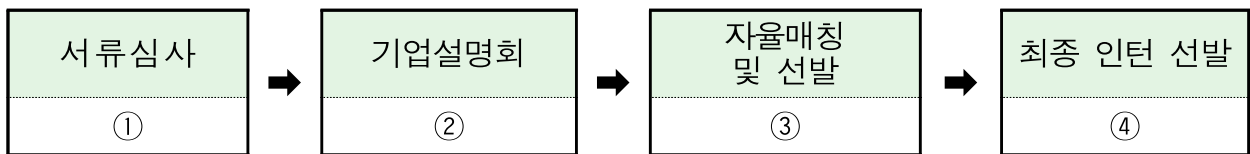
- * 항공료는 실비임(이코노미석 기준 왕복 1회)
- * 국제기구 및 국가산림협력사업 관련 기관은 국고보조율 100%
-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부 결정 및 정산

② 국내근무에 대한 지원

급여 하한액	산출내역
1,327천원/월	o 인건비 기준액 - 16년 최저시급 6,030원 × 110% × 8시간 × 25일/월)

- * 2017년 인턴임금 동등 적용(기준액 6,633원 → '17년 최저시급 6,470원 이상)
- * 국내근무가 필요한 기업에 한하여 상한금액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
- * 국고보조율 70% (1,327천원 × 70% = 930천원/월)
- * 해외파견 없이 국내 단독 근무·지원은 불가하며 국내근무 기간만큼 해외파견 기간 운영 필수, 기업측 부담 30% 외에 추가 인건비 지급은 기업 자율

3. 인턴 선발절차



① 서류 심사

- 서류상 미비점이 있는 지원자는 제외
- 해외인턴 선발기준을 근거로 지원자 및 기업체를 득점 순으로 분류
- 기업추천 인턴의 경우 별도의 서류심사 실시
-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 및 자율매칭 실시(기업체 인턴)

② 기업설명회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사업 참가 기업의 사업 및 직무 설명, 홍보, 상담 실시

③ 인턴-기업 간 자율매칭(기업체 인턴에 한함)

- (한국임업진흥원) 인턴 및 기업에 대한 기본 정보, 인턴지원자의 희망 지원기업순위, 매칭 기간을 기업체에 통보
- (기업체) 채용 희망 인턴과 개별 연락하여 매칭 동의를 얻은 후, 매칭 기한 내에 채용희망자를 선발하여 공문으로 발송
- (인턴) 원하는 기업체와 직접적으로 연락하여 협의

④ 최종 인턴 선발

4. 신청 방법

가. 신청 마감일 : '17. 04. 28.(금) 18:00

* 방문 및 우편접수만 인정

나.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3층 임업소득본부 해외산림인턴 담당자 앞

○ 주소 : (07570)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문의 : 02-6393-2705

다. 인턴지원자 제출서류

[공통]

- 해외산림인턴 응시원서 1부
- 학과(부)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자기소개서(A4 1~2장 내외, 양식불문) 1부
- 보호자 동의서, 본인 서약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각 1부

[해당자]

- 기업추천서(기업추천자에 한함) 1부
- 산림관련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사본 1부
- 어학성적 증명서(TOEIC, TEPS, TOEFL, CBT, 230/iBT,) 1부
 - * 해당 어학시험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신청마감일 기준 2년 이내
- 해외에서 연수 목적으로 1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증빙서류 1부
-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 확인서(공공기관 발행)
- 국제협력기관 인턴은 영문자기소개서 필수(A4 1~2장 내외, 양식불문)
 - * 서류 우대 조건
 - 영어성적 우수자(TOEIC 800점 이상 등)
 - 산림관련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기사 및 산업기사)
 -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취업취약계층]

- 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 1~3분위)
- ② 장기실업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 졸업일 기준)

5. 행정사항

- 모집공고 : '17. 04. 19.(수) ~ '17. 04. 28.(금)
- 1차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 '17. 05. 11.(목)
- 기업설명회 : '17. 05. 17(수)
- 인턴-기업 간 자율매칭 : '17. 05. 18.(목) ~ 05. 24.(수)
- 합격 최종발표 : '17. 05. 26.(금)
- 사전교육 : '17. 05. 31.(수) ~ 06. 02.(금) 남양주시 산림교육원

6. 기타사항

가. 인턴기업에 대한 계약해지

-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인턴참여자가 불의의 사고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
 - 인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부여를 하지 않거나 직무교육을 실시 하는데 있어 불성실한 경우
 - 해당국 노동관계법 등에 반하여 인턴을 활용한 경우
 - 사전에 제출한 인턴운영계획을 위반한 경우
- * 필요한 경우 해당국 또는 국내 관계 당국에 고발조치

나. 인턴 관리 및 지원

- 기업체
 - 인턴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 기본적인 노무, 비자, 문화적응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실시
 - 인턴관리 직원(기업)은 매월 5일까지 인턴참여자의 근로실태 및 업무수행에 대한 「해외산림인턴 활동 및 관리 보고서」 제출
 - 해외산림인턴 종료 1개월 전까지 해당 인턴 채용계획 제출
- 인턴
 - 인턴참여자는 인턴활동 종료 및 귀국 후 2주일 이내 「해외산림인턴 참여 결과보고서」 제출
 - 인턴 종료 후 취업 시 취업사항 보고(한국임업진흥원)